

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폐지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6. 25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5. 16
- 다. 회부일자 : 93. 6. 17
- 라. 상정일자 : 93. 6. 25

2. 제안설명 요지

- 동 운영조례의 제정근거인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. 12. 31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근거 소멸
- 동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모두 규정됨
(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~제4항)
-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규정함.
(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제정근거인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. 12.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.

그리고 동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폐지 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(제정 '91. 3. 27 조례 제186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